

## 7. 新都市아파트 建設現場 環境整備指針

資料提供：建設部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단지와 인접한 공사장에서는 파일항타나 철거 등 타격을 발생하는 야간작업은 제한하여 입주민의 휴식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 파일항타 및 철거공사 제한시간 : 20:00~익일 08:00
  - 토사운반 제한시간 : 23:00~익일 05:00
  - \* 특히 각급학교로부터 1km 이내에서는 가급적 휴일이나 하교후에 실시토록 유도함.컴프레써 등 중장비를 가동시에는 필히 방음덮개 등을 사용토록 하여 인근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공사용 차량은 가급적 가도로를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고 입주민 이용도로에서는 공사용차량의 통행을 억제키로 함.
  
- 먼지의 발생과 먼지의 날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단지출입구와 연결된 외부간선도로는 공사 완료 이전이라도 일정구간을 자갈(깻돌)로 포설하거나 시멘트 등으로 가포장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먼지발생을 방지하고,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부분에 자동차바퀴의 세척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여 흙먼은 차량의 출입을 단속하며,  
입주단지와 이에 연결되는 도로에는 살수차 및 진공청소차를 운행토록 하여 수시로 물을 뿌리도록 하며,  
아파트의 상층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를 포대에 싸서 옮기거나 동별 1개소 이상의 간이더스트슈트를 만들어 투하함으로써 쓰레기의 날림을 방지하며,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에는 필히 덮개를 사용토록 하여 노상에 토사가 뿌

려지지 않도록 함.

- 단지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는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점용허가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여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용하게 되더라도 점용기간은 가급적 단축하고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여타부분과는 별도로 구획토록 함으로써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함.
- 공사기간중의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는 가설울타리에 대형 그림 등으로 마감하여 미관을 제고토록 하고,  
간선도로에 면하는 외부비계는 철재를 사용하여 안전성과 미관이 고려되도록 하며,  
도로에서 3m 이상의 높이(2층부분)에 낙하물보호망을 설치하여 입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야간 작업장에는 100LUX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우기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하굴토공사 현장에는 비상 펌프를 설치토록 함.
- 입주자의 안내편의를 위하여,  
입주통보시 단지위치도, 단지배치계획도 및 주변교통안내도 등을 송부하고 입주개시 10일전까지 모든 주요간선도로 등으로부터 입주단지까지의 요소 요소에 입주유도표 지판을 설치토록 하여 입주에 편리를 도모함.
- 이번에 시달한 환경정비지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부에서는 순회점검시 이를 확인하고 해당 경찰서와 사업시행자는 토사의 과적행위 등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대한건설협회, 주택사업협회 및 중소주택사업협회는 신도시참여회원사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여 신도시 입주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함.